

-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실현과 협업 문화 확산을 통한 - 위기 대응 중심의 비상근무체계 혁신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태풍·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·일상화됨에 따라,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국가의 핵심 책무로 부상
- 우리청은 행복도시 개발 현장을 관할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존
- ☞ 기존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·상황 맞춤형의 실효성 있는 비상근무체계 구축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

① 건설현장과 주요 관리시설에 대한 위기관리·통제 역량 강화

- 비상근무 단계에 따른 직급별 역할에 따라 근무 편성 기준을 재설계하고 비상근무유형(출근/재택/대기)을 체계적으로 정립
- 특히, 건설현장 공사관리관과 관리시설 담당자를 상황반으로 별도 편성하여 위기 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

② 재해종합상황실 확대·개편을 통한 종합적 상황 대응 능력 향상

- 그간 재해상황실을 사업관리총괄과 내에 임시 운영하였으나,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당초 회의실 공간을 '재해종합상황실'로 확대·정비
- 재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'CCTV 모니터링 시스템' 도입하고, 냉방기기·간이침대 등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

③ 현장 중심 행정으로 사전 예방 강화 및 위기 대응 실행력 제고

- 형식적인 현장점검 및 상황보고를 지양하고 재난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사전점검 실시

- 기관장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지시하여 현장별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대응책 도출함으로써 위기 대응 실행력 제고



□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- (장애요인)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*로 인하여 비상근무체계 편성 등에 직원 부담 호소
 - * 오송 지하철도 참사('23.7) 당시 비상근무 직원(3명)이 형사 기소됨
- (극복방안) 기관장이 주재하는 반부패·청렴 협의회를 통해 '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'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과 공유
 - 제도적으로 실무자 부담을 분산(전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)하는 한편, 조직 전반의 '협업적 위기 대응 문화'를 조성하는 데 중점

□ 주요 추진성과

- (재난사고 '제로') 전년 대비 기상특보가 30% 증가했음에도, 비상근무체계 확대·구축을 통한 적기 대응으로 재난사고 제로 성과 달성
 - 기상특보(호우·태풍·대설 주의보·경보 등) 발효 즉시 전 직원이 단계별 근무 형태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적기 대응
 - 현장 등과 비상연락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전년 대비 대응 속도 및 복구 지시 체계가 비약적으로 개선

- (안전가치 내재화) 재난 대응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업무라는 인식 확산 등 전직원 안전의식 제고
- 비상근무체계가 형식적인 근무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청렴·책임 행정의 실질적 실현 수단으로 작용

< 비상근무체계 핵심 성과 >

AS IS(개선 전)	TO BE(개선 후)	개선효과
전 직원이 비상근무조로 편성	사업부서 담당자를 상황반으로 별도 편성	건설현장 및 관리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및 통제 기능 강화
임시 재해상황실 운영	재해종합상황실 운영	종합적 상황 대응 능력 제고
관계기관에 국한된 비상연락망 체계	관계기관 외에 건설현장 및 관리시설에 대한 비상연락망 까지 확대·정비	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상황 전파로 대응 속도 및 복구 지시 체계 비약적 개선
실무자 책임하에 안전 관리	기관장이 비전 제시 및 직접 현장 지휘	위기 대응 실행력 제고 및 협업적 조직 문화 조성

□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비상근무체계 혁신은 ‘행정의 책임성’과 ‘청렴의 실천성’을 동시에 추구한 대표적 사례로 구조적 체계 정비의 측면에서 파급력이 높음
- 재난 대응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적·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졌고 실질적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
- 현장 중심 점검 등 기관장의 실질적인 참여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, 안전의식 제고와 청렴행정의 문화적 내면화를 촉진
- 청렴이 단지 법과 제도의 준수가 아니라, ‘조직 전체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하는가’에 달려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

√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■	아니오 □	
√과제 제출 년도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□	'23년 □	'24년 ■
√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□	아니오 ■	